

제144회(임시회)

#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

제2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## 목 차

- 1.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(이재광의원 외 7인 발의) ..... 1면  
○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..... 4면
- 2.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(서순보의원 외 6인 발의) ..... 8면  
○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..... 11면

##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0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4. 10. 13

발 의 자 : 이재광 의원 외 7인

### 1. 제정 이유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 골자

#### 가.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
-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, 지정연구과제 연구, 기타 의회기능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

#### 나. 구성 등(안 제3조)

-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도시계획,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
-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함.

#### 다. 임기 등(안 제4조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06년 7월31일까지로 함.

#### 라. 회의(안 제5조)

- 회의는 분기별로 운영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집함.

### 3. 관계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3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등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

### 4. 예산수반사항 : 있음(위원회 운영 필요경비)

##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기능)**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등
2. 구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
3. 기타 의회기능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

**제3조(구성 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구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
2. 사회복지, 교육계, 종교계, 언론계, 문화·예술계 등 분야별 전문가
3. 도시계획, 교통, 토목,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

4. 기타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로서 의장이 인정한 자

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 간사는 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2. 안전 및 회의록 작성·보존
3.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
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4조(임기 등)**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에 임기는 2006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2.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
3.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때
4.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**제5조(회의)** ①회의는 분기별로 운영하되, 각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실비보상)**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수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.

③위원이 구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, 원고료 등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,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